

제 234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 7. 24.)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능 호]

목 차

1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
2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 -----	7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7. 1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7. 17.

2. 제안이유

- 거창군 관내 약초는 중·소농 및 고령층에서 생산한 약초를 유통체계 4~5단계를 거쳐 판매되고 있어 생산자의 생산 노력에 비해 소득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
- 생산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체계를 개편(2-3단계) 코자 2017년 완공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여 생산자 및 사용자 조직화, 비즈니스 역량강화, 마케팅 역량강화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3. 위탁개요

- 가. 시 설 명 : 거창약초유통센터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74번지(거점 APC뒷편)
- 다. 사업내용 : 거창약초유통센터 운영·관리
- 라. 위탁대상자 : 거창군 관내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 마. 위탁기간 :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5년이내 규정)

바. 위탁대상 사무

- 거창 약초산업 육성 연간계획 수립·시행
- 약초농가 및 향노화 체험단 교육과 홍보
- 생산자 및 사용자 네트워크 구성 등 조직화
- 품질관리 향상과 작업방법 표준 매뉴얼 작성
- 마케팅 전략수립 및 활동, 협업체계 구축 등

사. 그간 추진사항

- 2015년도 : 거함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16년도 :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준공, 공사 계약
- 2017년도 : 거창약초유통센터 착공 및 준공, 벤치마킹
- 2018년도 : 거창군향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 개정(유통센터추가)
- 유통센터 조정 보완공사 완료, 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 등

아. 향후 추진계획

- 2018. 7. : 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18. 8. : 공모에 의한 민간수탁자 결정 및 계약
- 2018. 9. : 약초유통센터 운영계약 및 개장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
 -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거창약초 우수성의 적극적인 홍보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품질관리 향상 기여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7년 완공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판매 유통체계를 개편 단순화(2-3단계)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홍보강화, 마케팅역량 강화, 생산자 조직화 등을 통한 약초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60일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따라서 거창 약초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 향상과 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약초유통센터』를 민간위탁 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협약체결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약초센터의 위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신설 2018.1.31.>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7.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7. 17.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34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8년 예산액 및 추가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18년 당초예산액	2018년 추가예정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8년	290	50	340	250	20	70	-

○ 사업내용

- 원자재 생산기반 시설지원
- 가공제품 생산기반 시설지원
- 석재자원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표면가공 기술개발

(표면가공복합기법, 보급형컬링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등

4. 부서의견

- 석재산업의 애로사항인 원자재 생산기반 시설지원, 석재 표면가공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지원이 필요하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출연하는 사항임.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등의 추진과 거창 화강석의 우수성 홍보 활동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금번 사업은 창조적 융복합화를 통한 전통적 석재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을 위하여 각종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경남의 지역 특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석재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하여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이며(‘15년 178백만원 2016년 309백만원 2018년 당초 290백만원 지원),
- 생산 효율화 시설지원을 통한 기업의 전문기술인 고용창출, 매출증대와 더불어 산업 생존력 강화와 석재가공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한 기술 집약형 석재산업 완성 및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은 2018년 당초예산에 290백만원을 기 출연 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로 50백만원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55-943-3924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0.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0명		5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양○○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신○○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최○○	거창석제조합(주) 대표			"	
		임○○	거창석산협회장			"	
		임○○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6. 3. 21 ~ '19. 3. 20		
	감사	이○○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이○○	이상철변호사사무소 대표			'16. 3. 21 ~ '19. 3. 20	
고문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4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64 (자산 총액)
	예산액	400	507	488		부채	1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200	200	200		자본	14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07				370		137

[붙임 2] 관계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